
안전보건교육교재

-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변경사항 -

2020. 1.



K I S I

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

한국산업안전관리원

TEL: 1588-8393 (代) FAX: (031)414-0725

안전보건교육일지

2020 년 1 월 일

결
재

담당

검토

승인

교육구분

1. 신규채용자 교육 2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. 특별안전보건 교육
4. 정기교육 5. 관리감독자 교육 6. 기타 ()

교육인원

구 분	계	남	여	비 고
교육대상 근로자수				

교육구분

교 육 과 목	교육방법	교육시간	교육장소	교재준비
산업안전보건법				

교육목적

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 및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

교
육
내
용

1. 법의 보호대상 확대
2. 도급인의 안전·보건 의무 확대
3. 근로자·사업주의 작업중지권한
4.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제 강화

※ 교육평가 및 의견

강 사 명

비 고

안전보건교육참석자명단

연번	소 속	성 명	날 인	연번	소 속	성 명	날 인
1				26			
2				27			
3				28			
4				29			
5				30			
6				31			
7				32			
8				33			
9				34			
10				35			
11				36			
12				37			
13				38			
14				39			
15				40			
16				41			
17				42			
18				43			
19				44			
20				45			
21				46			
22				47			
23				48			
24				49			
25				50			

안전보건교육참석자명단

연번	소 속	성 명	날 인	연번	소 속	성 명	날 인
51				76			
52				77			
53				78			
54				79			
55				80			
56				81			
57				82			
58				83			
59				84			
60				85			
61				86			
62				87			
63				88			
64				89			
65				90			
66				91			
67				92			
68				93			
69				94			
70				95			
71				96			
72				97			
73				98			
74				99			
75				100			

1. 법의 보호대상 확대

가. 개정 사유

-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'근로자'로 한정
-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지게차운전 기사 등)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
- 법의 보호대상 : 근로자 → 노무를 제공하는 자

나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
-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며 타인이 아닌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9개 직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범위에 포함됨

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	
① 보험설계사·우체국보험 모집원	② *건설기계 직접운전자(27종)
③ 학습지도사	④ 골프장 캐디
⑤ 택배기사	⑥ 퀵서비스기사
⑦ 대출모집인	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
⑨ 대리운전기사	

*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건설기계 운전자(27종)			
불도저	모터그레이더	콘크리트펌프	천공기
굴삭기	롤러	아스팔트믹싱플랜트	항타 및 항발기
로더	노상안정기	아스팔트피니셔	자갈채취기
지게차	콘크리트베틱플랜트	아스팔트살포기	준설선
스크레이퍼	콘크리트피니셔	고재살포기	특수건설기계
덤프트럭	콘크리트살포기	쇄석기	타워크레인
기중기	콘크리트믹서트럭	공기압축기	

다. 안전보건조치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조치를 하여야 함

구 분	내 용
양중기(크레인 등)	-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 조정
	- 정격하중 표시, 운전속도, 경고표시 등 부착
	- 혹 해지장치 구비된 크레인만 사용
	-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
차량계 하역운반기계	- 무게의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
	- 운전자의 시야 확보
	- 좌석 안전띠

2. 도급인의 안전·보건 의무 확대

가. 현행규정

- 도급인의 안전·보건조치 책임은 추락,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부담
-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의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해당

나. 문제점

- 산재발생 시 “일부도급” 혹은 “22개 위험장소”가 아니어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행법
- 사업장에서의 모든 업무는 직·간접적으로 사업에 수반되므로 **도급인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**
- 산재 발생 후 위험 장소를 추가하는 입법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
- 따라서 도급의 유형, 위험장소 여부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·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변경

다. 개정내용

- 도급 및 도급인과 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
- 용어정리
 - 도급 :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
 - 도급인 :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
 - 수급인 :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
 - 관계수급인 :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

- 안전보건**관리**책임자를 안전보건**총괄**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
 -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
 - 선박 및 보트 건조업,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는 50명 이상

-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,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·관리권이 있을 경우, **도급의 유형, 위험장소, 사업목적 등의 여부 관계없이**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·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

- 이를 위반한 도급인은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하며 근로자를 **사망**에 이르게 할 경우 **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 부과
 - *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

- 도급계약 체결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

- **도급의 금지**
 - ①도금작업, ②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작업 ③허가물질(베릴륨, 비소, 염화비닐 등(2종) 제조·사용하는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(일부 예외적 허용)

- **도급의 승인**
 - 중량비율 1% 이상 황산, 분화수소, 질산,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 작업,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3. 근로자·사업주의 작업 중지권한

가. 현행규정

근로자	사업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▪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▪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등 조치명령을 함께 규정함

나. 문제점

근로자	사업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▪ 근로자에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을 알지 못해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▪ 작업중지 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우려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산재발생의 급박한 발생 위험시 작업중지와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목적이 명확한 구분없이 하나로 규정되어있음

다. 개정내용

근로자	사업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별도의 조문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 중지 및 긴급대피 권한을 명시 ▪ 산재가 발생 할 급박한 상황일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일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▪ 근로자들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보건조치 ▪ 산재 발생 위험시 작업중지와 발생 후 작업중지의 목적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

4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작성·제출 [2021.1.16 시행]

가. 현행규정

- 유해·위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재를 양도·제공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받는 자에게 제공

나. 문제점

- 대상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은 하지 않되, 직접 취급함으로써 MSDS작성 의무가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
- 대상화학물질 용어만으로는 규제대상 및 목적을 유추하기에 어려우며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음

다. 개정내용

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MSDS 작성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 ▪ 약칭 - 대상화학물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 ▪ 약칭 - MSDS 대상물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작성 대상은 동일 ▪ 명칭만 변경
MSDS 작성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상화학물질 양도·제공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MSDS대상물질 제조·수입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양도·제공없이 제조·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
MSDS 기재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품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작성대상은 동일하나, 이를 명확히 함 ▪ ex) 에틸알코올 (x) 크리네타놀 (o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모든 구성성분의 함유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구성성분 중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해·위험성 물질만 기재 ▪ ex) 에틸알코올 92%
MSDS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미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는 MSDS를 제출받아 관리

라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제출

-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MSDS를 제출
- MSDS에 기재되지 않는 구성성분(유해·위험성 미분류 물질)이 있는 경우에도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을 MSDS와 함께 제출
- 현행법에 따라 MSDS에 유해·위험성 미분류 물질 및 구성성분을 모두 기재했거나 수입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**제출대상 물질이 유해·위험성 미분류 물질임을 확인**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, 별도 제출은 면제
- MSDS 혹은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**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

마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비공개 승인

- 영업비밀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MSDS에 적지 않을 수 있음
 -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명칭의 비공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
 - 승인 시 대체 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함
 -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를 작성한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

가.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

□ 현행규정

- 의무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며 법 위반 시 형벌을 부과
-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, 근로자가 사망 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규정

□ 문제점

- 근로자가 사망 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
- 형을 받고도 동일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가 사망 시 가중처벌을 규정하지 않음

□ 개정내용

-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 하여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은 후에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**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**

나.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

□ 현행규정

-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□ 문제점

- 현행법에 의한 처벌 이후에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없음
-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
-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미약

□ 개정내용

-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

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			
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수행		근로자 사망 시	
개정 전	개정 후	개정 전	개정 후
1년 이하의 징역	3년 이하의 징역	1년 이하의 징역	7년 이하의 징역
1천만원 이하의 벌금	3천만원 이하의 벌금	1천만원 이하의 벌금	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

*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1/2까지 가중 규정을 신설

다. 양벌규정

□ 현행규정

-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 = 사업주
범죄행위능력과 수형능력이 없는 자 = 법인
→ **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을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음**
-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

□ 문제점

- 기업의규모, 개인 혹은 법인 구별없이 동일한 처벌 규정 中
- 법인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도 부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이 동일
- 실제 법인에 대해 선고되는 벌금액이 사업주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미
- 기업규모가 클수록 벌금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볼 수 있음
- "산업안전보건법" 위반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기능&실질적 수행을 위해 **법인인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의 상향을 필요**

□ 개정내용

-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**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 상향 (1억→10억)**

□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신설배경

- 위 처벌은 제재적 의미보다는 예방적 목적에 더 큰 의미
- 제재조치는 산재방지라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

□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신설내용

개정 전	개정 후
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만 수강명령을 이행할 수 있음	근로자를 사망케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판결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(안전보건교육 포함)

-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. -

- 끝 -